

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4-047호

2024년 인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모사업 공고

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의제를 발굴하고,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통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연계 강화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고자 『2024년 인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모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3월 18일

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

1. 개 요

가. 사 업 명 : 2024년 인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모사업

나. 신청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4. 5.(금) 14:00까지

다. 사업기간 : 협약일로부터 ~ 12. 13.(금)

라. 대상지역 :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또는 쇠퇴지역으로 「2030년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」에 명시된 지역 (※ 붙임 4 참고)

마. 공모분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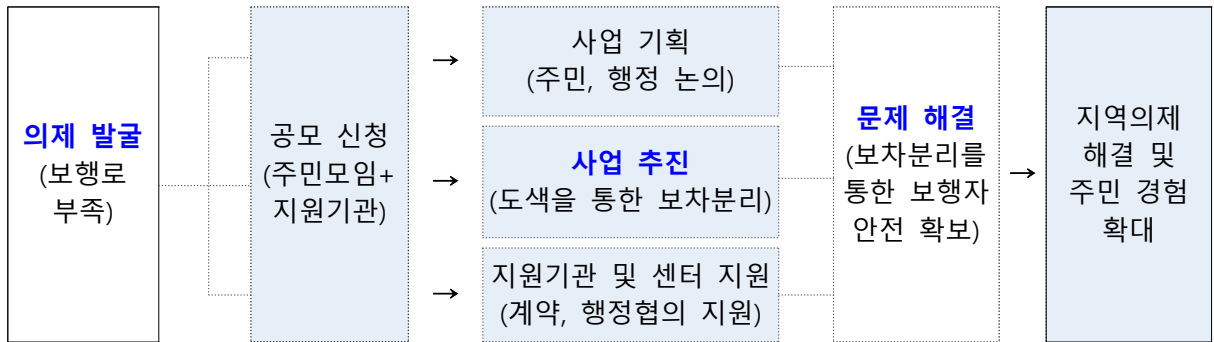
유 형	I. 주민협력사업	II. 도시재생기업 지원 사업
분 야	1. 소규모 환경개선 2. 재생계획 수립 및 지역홍보	1. 지역 인프라 관리·운영 2. 지역자원 활용
대 상 지	인천시 도시쇠퇴 법적기준에 맞는 지역	인천시 도시쇠퇴 법적기준에 맞는 지역 (도시재생활성화지역 대상 우선 선정)
응모자격	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단체 (지역주민 + 지원기관 참여 필수)	5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및 단체 (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)
선정건수	2건 내외	2건 내외
지원금액	1건당 7,000만원 이내	1건당 2,500만원 이내
지원내용 (예시)	▶ 빈집 리모델링 시범사업 ▶ 보차분리, 도로환경 개선 ▶ 골목정비 및 담장 허물기(주차면 확보) ▶ 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운영 ▶ 마을조사 및 재생계획 수립 ▶ 소식지, 신문 제작 등 홍보물 발간	▶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, 공동시설 등 관리·운영 ▶ 마을관리 공공서비스 사업 위탁 ▶ 지역 의제 해결을 위한 경제조직 설립 ▶ 지역자원 활용 사업 및 일자리 창출 ▶ 관광자원 활용 서비스 개발 및 제공

※ 지역주민 : 대상지에 거주 또는 사업, 직업 등의 이유로 생활하는 사람

※ 지원기관 : 군·구 도시재생 담당부서, 선정단체의 해당 동주민센터, 기초·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

바. 제안방법 : 원본서류 및 파일 제출 (HWP파일 및 직인 날인된 PDF파일)

1) 유형 I : 지원기관과 신청단체가 신청서류 작성 후 원본 제출



2) 유형 II : 신청단체가 직접 신청서류 작성 후 원본 제출



※ 위 사업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, 선정사업은 내용과 다를 수 있음

사. 제안내용

1) 주민협력사업

- 단순모임, 교육, 단발성 프로그램, 소규모 행사 등 **공동체 사업 불가**
- 거점공간 조성, 가로 개선 등 주민의견을 반영한 **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신청 필수**

구 분	예 시
소규모 환경개선	▶ 보행로 조성, 간판 정비 등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
	▶ 현장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 등
재생계획 수립 및 지역홍보	▶ 마을조사 및 의제 발굴, 마을계획 수립 등
	▶ 소식지, 마을신문 제작 등 사업 홍보물 정기발간 등

※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예시 외 내용은 사전협의 가능

※ 공사용역 계획 및 추진 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사전검토 요청 필수

2) 도시재생기업 지원 사업

- 지역과 상관없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, 통신판매업 등 **단순 개인사업 불가**
- 지역의 유·무형자원, 콘텐츠 등을 활용한 **지역경제 활성화 필수**

구 분	예 시
지역 인프라 관리·운영	▶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주차시설 등 관리·운영
	▶ 집수리, 경관개선 등 주거복지 사업 운영
지역자원 활용	▶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 활용 제조 및 판매 등 개발
	▶ 관광자원 활용 서비스 개발 및 제공

※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예시 외 내용은 사전협의 가능

2. 접 수

가. 접 수 처

- ▶ 우편/방문 :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, 더샵부평센트럴시티 A동 상가 4층
- ▶ 이메일 : wdnjs0624@ih.co.kr

나. 신청서류 (※ 붙임 2 참고)

구 분	공통서류	기타 증빙서류 (해당 시)
I. 주민협력사업	1. 검토의견서 (지원기관 작성) 2. 지원계획서 (지원기관 작성) 3. 제안신청서 4. 제안단체 소개서 5. 참여자 명단 6.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7. 주소지 증빙서류	1. 거점공간 사용 확인서 2. 타 공모사업 참여 증빙서류 3. 기타서류
II. 도시재생기업 지원 사업	1. 사업신청서 2. 사업계획서 3.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4. 주민등록증 사본(대표자) 5.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	1. 사실증명원(사업자등록 내용) 2. 사업자등록증 3. 법인등기부등본 4. 설립 및 인증 증빙서류 5. 창업 및 지원사업 참여 증빙서류 6. 지역사회발전 참여 증빙서류 7. 기타서류

다. 지원 제외 대상 : **서류심사(1단계)에서 선정 제외**

구 분	내 용
I. 주민협력사업	▶ 유사·중복사업으로 공모사업 형태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단체 ▶ 과거 광역센터 공모사업 포기 단체, 일방적으로 사업을 축소한 단체 ▶ 특정기관,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영리목적의 기존사업 ▶ 종교 전파, 정당지지 등의 목적을 갖고 사업을 신청하는 단체 ▶ 단순 친목회 등 사적모임, 용도지역 상향 등
II. 도시재생기업 지원 사업	▶ 기존 사업아이템을 주제로 신청하는 단체 ▶ 공고일 기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 단체 ▶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를 받는 단체 ▶ 사행성 및 환경오염 등 반사회적 성격의 사업을 하는 단체 ▶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

※ 제외대상 여부 담당자 사전확인 필수

3. 심 사

가. 심사기준

- 1) 선 정 : 고득점 순으로 선정되며, 심사 결과 **80점 이하 단체는 선정 제외**
- 2) 동 점 : 대면심사 점수 높은 단체 우선 선정
- 3) 포 기 : 선정된 단체 사정에 따라 사업포기 시 차순위 단체 선정

※ 사업 포기 단체는 향후 3년 간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

나. 심사항목 및 평가지표

- 1) 서류심사 : 가점항목 관련 해당 시 서류 제출 필요

구 분	심사내용	평가점수
I. 주민협력사업	▶ 사무공간 및 이용시설 무상임대 협약을 맺은 단체 ▶ 과거 주민공모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단체 ▶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신청 단체	가점 2점
II. 도시재생기업 지원 사업	▶ 과거 창업지원 및 육성사업 등 참여 경험이 있는 협동조합 및 기업 ▶ 무료 반찬 나눔, 성금 기탁 등 지역사회 공헌에 참여했던 협동조합 및 기업	가점 2점
	▶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협동조합 및 기업	가점 3점

- 2) 현장실사

- 거점공간 및 사업장 점검(운영, 유급근로자 근로여부 등)
- 재개발 및 재건축 현황, 도로 및 경관개선 필요도 등 대상지 쇠퇴도 점검

※ 현장실사 결과 신청서와 다른 사실이 발견될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3) 대면심사

- 도시재생사업 및 협동조합 관련 전문 심사위원 구성(내부 2인, 외부 3인)

구 분	심사내용	기 준
Ⅰ. 주민협력사업	▶ 타당성 : 사업의 필요성, 공익성, 예산편성 적정성 등	40점
	▶ 적극성 : 주민단체 역량, 행정기관 참여 의지	20점
	▶ 현실성 : 사업계획 구체성, 사업 실현가능성	20점
	▶ 지속성 : 사업종료 후 지속가능성	20점
Ⅱ. 도시재생기업 지원 사업	▶ 지속가능성 : 사업 발전 가능성, 사업 타당성 및 시장성	50점
	▶ 지역기여도 : 지역공헌 가능성, 지역 활성화 효과	30점
	▶ 사업적합도 : 사업 분야 이해도 및 적합도	20점

※ 세부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

4. 보조금 지급, 사업평가 및 정산

가. 선정된 단체 및 기업과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협약서 내용에 따른 효력 발생

나. 심사의견을 반영한 실행계획서와 보조금 통장사본 등 제출

다. 교부금은 지급절차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 검토 및 승인 후 지급 예정

라. 다음 각 호의 사항을 **위반할 경우 사업지원 철회 및 교부금 환수 조치**

- 1)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모사업에 3년 간 참여 불가
 - 팀원으로 참여하여 수혜 받았던 사업계획서로 신청하는 것도 도용의 범주에 포함
- 2)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계획으로 중앙부처 및 시·군·구로부터 중복하여 사업비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
- 3)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
- 4)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
- 5) 실행계획서와 다른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
 - 사업계획 변경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요청해야하며, 검토 및 승인 없이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
- 6)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

7)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

8)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되거나, 센터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

마. 분기별 중간정산(3~4회) 결과 **집행률이 80% 미만인 경우 2차 사업비 교부 지연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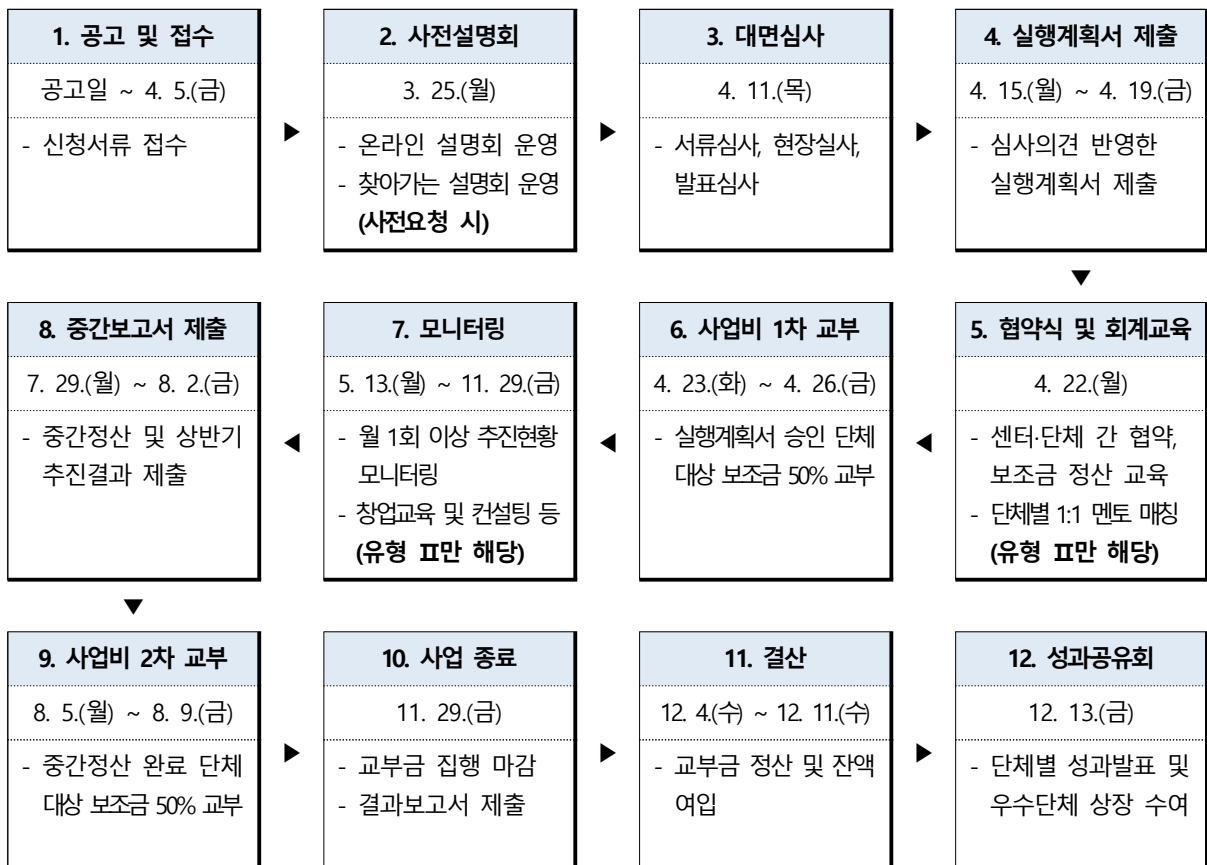
바. 최종정산 결과 **집행률이 80% 미만인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**

중지 및 환수 내용

- ▶ 본 사업은 「2024년 인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모사업」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허위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. (지방재정법 제97조,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,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인천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,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 32조,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)
- ▶ 부정사용금액이 발견될 시 교부금 전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습니다.
- ▶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팀)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5. 추진절차

가. 일 정



※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

나. 필수사항

- 1) 사전설명회 : 온라인(ZOOM) 사전컨설팅 신청단체별 3인 이상 참석
- 2) 대 면 심 사 : 발표자료(PPT) 준비, 대표자 포함 3인 이상 참석
- 3) 실행계획서 : 심사의견 반영한 계획서 기한 내 미제출 시 차순위 단체 선정
- 4) 협 약 식 : 단체별 대표자 및 회계담당자와 지원기관 포함 5인 이상 참석
- 5) 모 니 터 링 : 모니터링 일정협의 불가 및 정산자료 누락 시 사업 중단
- 6) 중간보고서 : 1차 사업비 50% 미만 사용 시 2차 사업비 교부 불가
- 7) 사 업 종 료 : 사업종료 이후 교부금 사용 시 환수 조치
- 8) 결 산 : 기한 내 정산서류 미제출 시 1, 2차 교부금 전액 환수
- 9) 성과공유회 : 단체별 대표자 및 지원기관 포함 5인 이상 참석

※ 필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단체에 한해 사업 미선정 또는 사업취소 절차 실행

5. 유의사항

가.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나.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할 수 없음

다.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이후 기한 내 사업비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,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라. 사업비 보조금은 심사 선정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

마. 교부금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, 본 사업의 교부금만 사용하는 체크카드 발급 필수

바. **사업비 교부 전 협약일로부터 1년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(자부담)**

사. 선정단체의 사업 포기 시 보조금 교부 취소·환수되며, 향후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

아. 사업내용 작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파란색 사선의 작성 내용(예시내용)은 삭제하고 각 사업의 계획내용에 맞게 작성

자. 사업내용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한 빨간색 내용(작성 시 주의 사항)은 삭제하고 작성내용과 분량 등을 참고하여 작성

차. 서명을 제외한 신청서류는 한글파일로 작성하며, 서명은 반드시 본인 자필로 작성

카. 본 사업을 신청하는 주민 또는 기업은 주민등록상 주소 혹은 직장소

재지(사업자등록증) 등으로 증빙서류 제출
타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공고문 및 신청서류 서식 다운로드>

- ▶ 인천도시공사(<https://www.ih.co.kr>) : iH알림 - 공지사항
- ▶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(<https://www.iurc.or.kr>) : 열린광장 - 공지사항

<문의 및 상담>

- ▶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협력팀 (☎ 032-260-5372)

- 붙임 1. 「2024년 인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모사업」 공고문 1부.
2. 「2024년 인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모사업」 신청서 각 1부.
3. 「2024년 인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모사업」 예산집행 기준 각 1부.
4. 「2024년 인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모사업」 대상지 1부. 끝.

별첨

2024년 인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모사업 예산집행 기준

1. 인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모사업 예산집행 근거 (관련 상위 법규)

- 가.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
- 나.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시행령
- 다.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- 라.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
- 마.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- 바.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
- 사.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아. 지방보조금 관리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
- 자.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
- 차. 협동조합 기본법
- 카.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

「인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모사업」 사업비 집행기준의 의의

관련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주민공모사업의 취지와 방식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 기준에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상규에 따름

2. 예산편성 기본 원칙

가. 예산편성 원칙

- 1) 보조금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(용도 외 사용 금지)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(용도 외 사용 금지)

-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,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2)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한다. 다만,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.
- 3) 예산은 2024년 인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모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.(실질 소요예산으로 수립)
 - ※ 「2024년 인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모사업 예산집행 기준」에 제시된 예산항목, 비목과 기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(단가×수량×횟수×인원 = 금액)을 제시하여야 함
- 4)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인 편성을 지양함. 즉, 예비비, 잡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.
- 5) 구체적 지출 불가 항목

- ▶ 동산·부동산·권리의 구입·개발·수선 등 자산적 가치가 생성·증가되는 자본적 경비
 - ※ 컴퓨터, 에어컨 등 내부재 구입, 홈페이지 프로그램 모바일 앱, 판매용 도서의 개발·제작 등 권리·자산 가치가 생성·증가하는 경비
- ▶ 단체의 사무실 임대료·전화요금·공과금, 차량유지·관리비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단체 운영경비
- ▶ 현장학습의 경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기성 방문
- ▶ 이행보증보험료,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은 별도 자부담으로 집행
- ▶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(불우이웃돕기, 시상금 등)
- ▶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(수리비, 보험료 등)
- ▶ 인건비, 퇴직적립금, 근로자 복지비용
- ▶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
- ▶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·노무·회계·경영컨설팅 비용
- ▶ 회계감사 비용, 소송대리 비용
- ▶ 보험료, 기부금, 자금조달비용(대출 이자), 각종 세금(부가세 등)
- ▶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
- ▶ 그 밖에 인천시·군·구,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

※ 회계처리의 편리성을 위해 수수료는 지출 가능하며, 강사료·활동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편성해야 함

3. 보조금 운영지침

가. 정보 공개

- 1)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에게 공개한다.
- 2)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정보(제안자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등)를 제외한 단체명, 사업내용,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.

나. 보조금 교부

- 1) 실행계획서 상의 예산계획을 토대로 2회 분할 교부한다.
- 2) 보조금 적정집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.
- 3) 사업추진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사업비를 지출하거나 **중간정산 결과 예산 집행률이 80% 이하일 시 사업을 중단시키고 교부된 금액의 전부를 환수** 할 수 있다.

다. 수익금의 활용

- 1)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,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다.
- 2) **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1/2 이상을 지역사회에 기여** 해야 하고, 이를 정관 및 협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3) 지역사회 기여의 협의적 범위는 사업구역 내를 의미하며, 광의적 범위는 자치구 내를 의미한다.
- 4) 수익 발생 현황 및 향후 사용계획은 최종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라. 이행보증보험 가입

- 1) 보조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
(협약일로부터 1년)
- 2) **이행보증보험 가입비용은 사업비가 아닌 별도 자부담으로 한다.**

마. 사업종료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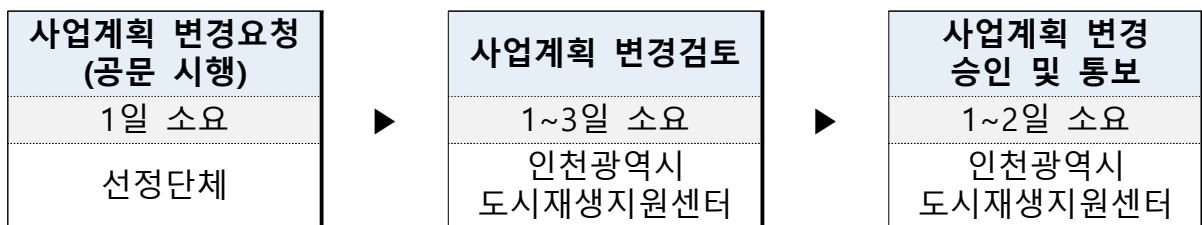
- 1)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종료일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.
- 2) 다만, 사업종료 시점 이후 집행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 센터에 사업연장 승인을 받아야하며, 사업 참여자는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- 3)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와 집행 잔액,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.

※ 사업비 정산,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11조, 112조, 113조에 근거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
바. 사업(실행)계획 준수

- 1)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2) 보조금 총액의 10% 이상, 동일 항목 내 보조세목(세부항목)간 30%초과 예산변경 시 문서를 통해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3)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.
- 4) 경미한 예산변경에 따라 변경된 사업내용이 기존 사업의 목적과 취지, 계획에 부합하지 않거나, 부당한 내용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.
- 5) 사업비 신청금액 내에서 세부 사업내용의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하다.
- 6) 변경절차



※ 사업계획 변경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완료

사. 보조금 통장 개설, 체크카드 발급 사용

- 1) 보조금 통장은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신규 개설한다.
- 2)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하고 이자잔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.
- 3)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한다.
- 4) 보조금 사용 시 개인 포인트 적립은 허용되지 않는다.

아. 회계처리 원칙

- 1)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(계약, 물품구매 등)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

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.

- 2) 보조금 통장, 지출결의서, 영수증(체크카드전표, 전자세금계산서, 계좌이체 기록)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.
- 3)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다.

자. 보조금 사업비 집행방법

- 1) 원칙적으로 보조금 사업비는 체크카드, 계좌이체,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해야 하나 1차 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산서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.
- 2) **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한다.**

차. 인건비성 경비(강사비, 회의비, 원고비, 심사비, 자문비 등) 지급방법

- 1) 활동비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(온라인 송금, 인터넷뱅킹)하여야 한다.
- 2) 월간 지급총액이 125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.8%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한다.
- 3)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,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한다.(온라인 송금, 인터넷뱅킹)

카.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

- 1) 보조금 집행은 「2024년 인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모사업 예산집행 기준」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,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해야 하며,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.
- 2)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「2024년 인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모사업 예산집행 기준」의 단가,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다. 다만,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.

타. ‘지방계약법’ 절차 준수

- 1) 사업선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「지방계약법」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.
- 2) 지원기관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,000만원 이상의 공사, 용역,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

수 없는 계약 건에 대해서 사업선정자가 원할 경우 ‘계약의 대행’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.

- 3) ‘계약의 대행’ 이외에도 지원기관은 사업선정자가 「지방계약법」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.

파. 신청제외 대상 및 유사·중복 지원 제한

- 1) 신청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.

-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
-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
- 주관기관에서 이미 사업화 지원을 받았거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-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

※ 단, 위 각목에 해당하더라도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지 아니함.

※ 유사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확인 및 중복참여자 선정 제외는 본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이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중복참여 여부는 해당 유사 지원사업 주관기관의 판단에 따름.

- 2)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중복지원이 제한되는 경우
- 3) 동일한 사업모델 및 계획으로 정부부처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타 사업과 지원기간(협약기간)이 중복되는 경우
- 4) 본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기간 동안에는 사회적기업(고용노동부), 마을기업(행정안전부) 지원 사업으로 중복지원 불가
 - 그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복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
 - 지자체에서 자체 지원하는 사업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중복지원 가능

하. 기타 준수사항

- 1) 사업 선정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즉시 지원기관과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·반환하여야 한다.
- 2) 보조금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·관리하여야 하고,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.
- 3) 개인·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한다.
- 4) 정치, 종교, 유흥,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안된다.